

【붙임 5】

▣ 아동영향평가 사전·사후 점검표(총괄부서용)

작성자	담당부서	아동영향 총괄부서	작성 대상	사업	계획	조례	작성 시점	사전 점검	사후 평가
-----	------	--------------	----------	----	----	----	----------	----------	----------

※ 관리번호	아동영향 (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 점검표
-	
조례·규칙명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를 확인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고려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참여	8.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11.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조례나 규칙이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부서점검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처에서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점검표 작성시 누락여부가 있는지, 해당 근거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비고란에 정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해당 항목과 부합된 내용인지를 점검합니다. - 부서 자체점검표 작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제출처에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아동권리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에서 ‘② 아니오’라 응답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①에’라고 응답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및 규칙의 목적과 내용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검토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이 특정 계층의 아동(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200% 이하 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 규정, 예산상 제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실질적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서에서 검토한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아동을 포함한 경우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참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획 시 아동의 의견 수렴, 실행 시 아동의 의견 수렴 계획,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 아동이 아닌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②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아동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특히 영유아), 아동을 대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당한 효과인가, 약간의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소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사안(조례나 규칙)을 두고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주요한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이 정확하고 근거도 분명하다면, 아동의 주요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도 대상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주요한 대상이 아니거나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에서 특정한 조치들이 부족할 경우(예: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거나, 아동/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기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조례나 규칙에서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영향(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검토의견서

(. . .)

조례 및 규칙명	
검 토 항 목	
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특정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사용) - -
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아동의 권리침해방지 및 권리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 - -
3.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심층(사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없음 <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1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input type="checkbox"/> 2 전문가에 의한 자문
4.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없음 <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1 업무이행에 대한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 <input type="checkbox"/> 2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 <input type="checkbox"/> 3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4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사후검토', <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권리침해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 (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 점검표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합니다.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입법절차의 까다로움과 아동에게 미치는 행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전문가의 자문(특히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조속한 심의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한 후에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나,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한 시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특히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를 줄이거나 권리증진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조례 및 규칙(안)으로 해당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나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는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문가에 의한 자문'은 우선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혹은 외부용역(자문)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이나 계획의 추진의 결과가 모호한 경우, 혹은 특정 아동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대안을 찾기 힘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당 사업 및 계획 추진이 중요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아동영향평가 초기 점검지」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조례나 규칙의 통과로 시행되게 될 사업의 연간 사업액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다.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가', '다'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영향평가 중 사업의 경중, 아동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고 아동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자체 사후평가'만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후평가방식을 단수 혹은 복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영향평가에서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활용합니다. - 조례나 규칙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대상의 평가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례나 규칙의 영향력이 전면적이거나 장기간 모니터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을 활용합니다. - 아동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합니다. |
|--|---|

※관리번호	아동영향평가(공통) 총괄부서 사후평가 점검표
-	
사업명(계획명) 조례및규칙명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3.해당사업은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있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고 려	4.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해당업무 담당자는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참여	7.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계획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해당업무 담당자는 운영을 위하여 아동과 이해관계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기	10.해당 조례나 규칙, 계획의 의의 혹은 사업의 성과등을 아동을 포함한 구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11.해당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2.해당 조치가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켰는가?	권리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부서점검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처에서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점검표 작성시 누락여부가 있는지, 해당 근거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비고란에 정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해당 항목과 부합된 내용인지를 점검합니다. - 부서 자체점검표 작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제출처에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아동권리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에서 '②아니오'라 응답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①예'라고 응답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장기 계획, 조례 및 규칙의 목적과 내용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검토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이 특정 계층의 아동(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200% 이하 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 규정, 예산상 제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실질적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서에서 검토한 대상이 아동을 포함한 경우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미치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참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획 시 아동의 의견 수렴, 실행 시 아동의 의견 수렴 계획,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 아동이 아닌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②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아동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특히 영유아), 아동을 대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당한 효과인가, 약간의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소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작성한 사후평가서에는 관련한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목표량 대비 사업실적을 검토하는 등으로 기대효과를 평가합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주요한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이 정확하고 근거도 분명하다면, 아동의 주요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도 대상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주요한 대상이 아니거나 소관부서 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에서 특정한 조치들이 부족할 경우(예: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거나, 아동/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기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사후 아동영향 검토 의견서(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용)

(. . .)

단위사업(세부사업)명 조례 및 규칙명 장기 계획명	
검 토 항 목	
<p>1. 해당 조치(조례, 규칙, 단위사업,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 사용)</p> <p>-</p> <p>-</p>	
<p>2. 해당 조치(조례, 규칙, 단위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담당부서에서 아동의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 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 (필요시 별지 사용)</p> <p>-</p> <p>-</p>	
<p>3. 해당 조치(조례, 규칙, 단위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담당부서에서 아동의 이해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 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 (필요시 별지 사용)</p> <p>-</p> <p>-</p>	
<p>4. 해당 조치(조례, 규칙, 단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다른 형태의 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다른 형태의 영향평가 필요함</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1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2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3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사후검토’,</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4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p>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권리침해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 (공통)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 점검표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합니다.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수행을 유보합니다. 행정처리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속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 (특히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가능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별도의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나,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한 시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수행을 유보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 (특히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를 줄이거나 권리증진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동이해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아동의 이해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이는 '당사자 참여', '홍보', '대중에게 알리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아동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명목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나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안을 제안합니다.
다른 형태의 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사후영향평가를 작성하였지만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 2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 3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사후검토', 4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 - 이에 대한 결정은 아동영향평가담당부서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을 합니다.